

영국 쇠퇴·낙후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제도

: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을 중심으로

변필성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기업은 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해 영리활동을 전개한다. 즉 영리사업과 그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여 노령, 장애, 장기실업 및 저소득 등 개인적 한계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소득증가, 삶의 질 향상 등 해당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생산적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벌이는 기업으로 규정하

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또한 최근 들어 정부도 지역형 사회적 기업, 지역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지역자원에 기반을 두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을 발표해오고 있다. 그런데 생산적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하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창업·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사회적 기업에의 원활한 자금공급이 중요하다. 그에 관련된 외국의 제도로서 영국의 CITR(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과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ITR과 CDFI는 영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쇠퇴·낙후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기업 등에의 자금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다.

CITR과 CDFI의 개요, 그리고 관련 용어 정의¹⁾

CITR은 사업실적(Track Record) 부재 및 담보 결여로 인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쇠퇴·낙후지역(Disadvantaged Communities)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인증 CDFI의 자금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국정부가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다. 구체적으로 CITR은 인증 CDFI에 자금을 투자한 개인·법인에게 영국정부가 소득·법인세액을 5년간 매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리고 인증 CDFI는 취약계층이 소유·경영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기업, 또는 쇠퇴·낙후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예: Micro-Finance Fund)으로서 CITR을 활용하여 개인·법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해당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한다. 인증 CDFI는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소매(Retail) CDFI와 주로 다른 CDFI에 자금을 공급하는 도매(Wholesale) CDFI로 구분된다.

CDFI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CITR을 활용하여 개인·법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

리고 인증은 3년간 유효하므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영국 정부부처인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CDFI의 인증을 관리하고 인증 CDFI로 하여금 인증 기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매년 제출케 하는 등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그런데 인증 CDFI의 CITR을 통한 투자유치에는 한도가 부과되는데, 인증기간 중에 도매 CDFI는 2천만 파운드까지, 소매 CDFI는 1천만 파운드까지 유치할 수 있다.

한편 CITR과 CDFI와 관련된 용어 중 취약계층은 인증, 성, 연령, 종교, 장애(Disability)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Disadvantaged) 간주되는 개인으로 영국정부가 정의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자산총액(Annual Balance Sheet Total)이 4,300만 유로를 넘지 않으며, 동시에 중소기업이 아닌 조직이 통제하는 소유지분이 25%를 넘지 않는 기업을 지칭한다. 또한 쇠퇴·낙후지역은 영국정부 및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쇠퇴·낙후 정도에 대한 공식적인 지표와 행정구역 또는 그에 준하는 구역을 활용하여 지정한 지역²⁾, 그리고 영국정부가 인정하는 소득, 고용, 건강·결핍·장애, 교육·훈련·스킬, 서비스 접근성, 주택 분야 의 쇠퇴·낙후 정도 통계를 참고했을 때 쇠퇴·낙

1)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연도미상; 2008)와 Explanatory Memorandum to the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Regulations 2008. no.383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2) 잉글랜드에서는 쇠퇴·낙후지역을 Indices of Deprivation 2000을 토대로 Electoral Ward와 Local Authority District 수준에서 정의하고, 스코틀랜드의 경우 Index of Area Deprivation을 활용하여 Postcode Sector 수준에서 정의한다. 그리고 웨일즈에서는 Welsh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2000을 근거로 하여 Electoral Division 수준에서, 북아일랜드의 경우 Noble Index를 활용하여 Electoral Ward 수준에서 정의한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008).

후수준이 영국정부 및 자치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상응하는 지역을 포괄한다.

CITR의 운용 및 관련 규제³⁾

영국정부는 인증 CDFI에 자금을 투자한 개인·법인에게 투자금액의 5%에 달하는 소득·법인세액을 투자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매년 공제해주는 CITR을 제공한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연도미상). 그러나 인증 CDFI에 투자한 개인·법인이 받게 되는 연간 CITR은 투자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법인세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CITR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투자 후 30일 이내에 인증 CDFI가 세액공제증서(Tax Relief Certificate)를 발급해야 하며, 세액공제증서 발급은 앞서 기술한 인증 CDFI의 투자유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증 CDFI에 투자한 개인·법인이 CITR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개인·법인이 투자 후 5년의 기간 중에 해당 인증 CDFI의 지배권(Control)을 획득할 수 없다.
- ② 개인·법인은 투자 시 투자의 소유자로서 해당 투자로부터 자신만이 이익을 얻는 주체(Sole Beneficial Owner)이어야 한다.
- ③ 투자자가 인증 CDFI인 경우, CITR은 부여되

지 않는다.

- ④ 조직형태가 파트너십(Partnership)인 인증 CDFI의 구성원이 해당 CDFI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CITR이 주어지지 않는다.
- ⑤ 조세포탈 목적의 투자에는 CITR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인증 CDFI에 대한 개인·법인의 투자에 해당 투자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예: 보험, 보증 등)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CITR을 제공받을 수 없다. 한편, 개인·법인의 CITR 제공에 관한 업무는 영국 정부부처인 HMRC(HM Revenue and Customs)가 담당한다.

또한 인증 CDFI에의 투자는 자금대여, 자금예치(인증 CDFI가 은행인 경우), 그리고 인증 CDFI 발행 주식 및 채권의 약정 매입(Subscrip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연도미상: 변필성, 2009: www.hmrc.gov.uk/manuals/citmanual). 투자금액은 투자자가 인증 CDFI 발행 주식 및 채권을 매입한 경우 약정가격으로, 그리고 투자자가 인증 CDFI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차입금의 연도별 1일 평균 잔액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자금대여 3차연도 이후 차입금의 연도별 1일 평균 잔액이 자금대여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간의 1일 평균 잔액이 초과하게 될 경우, 투자금액은 후자의 평균치로 대체 설정된다. 한편,

3) www.hmrc.gov.uk/manuals/citmanual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인증 CDFI에의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배당금 또는 이자)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CITR은 인증 CDFI의 자금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자본비용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벌이거나, 또는 쇠퇴·낙후지역에 입지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기업 등への 자금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이것은 인증 CDFI에 자금을 공급한 개인·법인이 최소한 CITR을 통해 5년간 연 5%의 투자수익 창출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연도미상).

1. 투자자금 상환 제한

인증 CDFI에 투자한 개인·법인이 5년간 CITR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CDFI가 차입한 자금의 상환, 또는 발행하여 매각한 주식 및 채권의 재매입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① 인증 CDFI가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차입 후 첫 2년간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으며, 3, 4, 5차연도에는 각각 차입금의 25%까지, 50%까지, 75%까지만 상환할 수 있다. 단, 상환비율만큼 해당 투자자에게 부여한 CITR은 축소된다.
- ② 개인·법인에 의한 인증 CDFI에의 자금예치는 자금대여로서 간주되므로, 상기의 차입금 상환 규정을 적용받는다.
- ③ 인증 CDFI로부터 개인·법인이 약정을 통해

매입한 주식 및 채권은 인증 CDFI가 5년 이내에 재매입(Redeem)할 수 없다.

- ④ 또한 개인·법인이 대여한 자금과 매입한 주식 및 채권은 인증 CDFI가 5년 이내에 상환하거나 재매입할 수 있는 대출, 채권, 주식 등으로도 전환·교환될 수 없다.

2. CITR 제공 중단

인증 CDFI에 투자한 개인·법인에의 CITR 제공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중단된다.

- ① 특정 회계·과세연도 종료 직후의 자금대여 기념일 이전에, 투자자가 대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대여자금으로 조성된 자본이 소멸되거나, 또는 CDFI의 원금상환으로 차입금 잔액이 설정된 하한선(이하 차입금 잔액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회계·과세연도부터 CITR을 받을 수 없다.

차입금 잔액 하한선은 자금차입 3, 4, 5차연도에 적용하는데, 평균 차입금 잔액(자금차입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간 1일 잔액의 평균)의 75%, 50%, 25%로 각각 설정한다. 또한 차입금 상환은 일반적인 대출원금 상환으로 이루어지며, 인증 CDFI의 자금차입일 1년 전부터 6년의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투자자에의 자금지급도 대출원금 상환으로 간주한다.

- ② 특정 회계·과세연도 종료 직후의 인증 CDFI 발행 주식 및 채권 매입 기념일 이전에, 투자자

4) 은행에서 투자를 받은 인증 CDFI가 정상적인 금융거래하에서 투자자인 은행에 예치한 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www.hmrc.gov.uk/manuals/citmanual).

가 매입한 주식 및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투자자가 CDFI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이 각 연도에 적용되는 주식 및 채권에의 투자자금 대비 비중한도(이하 투자자금 대비 비중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회계·과세연도부터 CITR을 받을 수 없다.

인증 CDFI 발행 주식 및 채권 매입일 직전의 1년을 포함한 3년의 기간 중에는 투자자가 해당 CDFI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식 및 채권 매입일 기점 3차, 4차, 5차연도 각각에 부과되는 투자자금 대비 비중한도는 해당 연도까지 투자자가 CDFI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총액이 각각 투자자금의 25%, 50%, 75%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 ③ 인증 CDFI에 개인·법인이 투자한 지 5년 이내에 해당 CDFI가 인증을 잃게 되는 경우, CITR이 부여되지 않는다. 즉 투자자가 이루어진 지 1년 이내에 CDFI가 인증을 잃는 경우, CITR이 주어지지 않으며, 1년 이후 5년 이내에 인증을 잃는 경우, 인증을 상실하기 직전의 투자 기념일이 속하는 회계·과세연도부터 CITR을 받을 수 없다.

3. 제공된 CITR의 회수

인증 CDFI에 투자한 개인·법인이 투자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또는 CDFI로부터 적정수준을 넘는 금액을 지

급받는 경우, 제공된 CITR을 회수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① 인증 CDFI에 개인·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개인·법인이 해당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대여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자금대여자가 각 연도에 제공받은 CITR을 회수한다. 단, 인증 CDFI의 해산·청산 시의 자산배분, 대여된 자금의 완전 소진(Entire loss) 및 그에 준하는 상태, CDFI의 인증 상실 등에 따라 처분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인증 CDFI의 자금차입 3, 4, 5차연도의 차입금 잔액이 각 연도에 적용되는 차입금 잔액 하한선에 미달하게 되면, 자금을 대여한 개인·법인이 제공받은 CITR을 회수한다.
- ③ 인증 CDFI로부터 매입한 주식 및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시점에서 5년 이내에 처분하되, 처분시점 현재 인증 CDFI가 인증을 유지하고 처분이 투자자로부터의 주식 및 채권 재매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투자자가 제공받은 CITR을 회수하거나 축소한다. 주식 및 채권의 처분이 거래 당사자가 독립적이고 동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도별로 제공된 CITR로부터 처분가액의 5%만큼의 금액을 회수하고⁵⁾,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된 CITR 전부를 회수한다.
- ④ 인증 CDFI 발행 주식 및 채권을 투자자가 매입한 날짜의 1년 전부터 6년의 기간 중에 해당 CDFI로부터 투자자가 지급받은 자금총액이

5) 한편, 연도별로 제공된 CITR이 처분가액의 5% 미만인 경우, CITR 전부를 회수한다(www.hmrc.gov.uk/manuals/citmanual).

해당 6년의 기간 중 각 연도에 적용되는 투자 자금 대비 비중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도별로 투자자가 제공받은 CITR을 회수한다. 단, 특정 연도까지 투자자가 수령한 자금총액이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투자자금 비중한도 내에 있을 경우, 제공된 CITR의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급받은 총액에 비례해서 CITR을 축소하여 제공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증 CDFI에 투자한 개인·법인에의 CITR 제공 관련 규제는 인증 CDFI가 자금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이다. 즉 투자자가 CITR을 5년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과하는 인증 CDFI에 의한 투자자금 상환 제한, 그리고 CITR 제공 중단 및 기 제공된 CITR 회수와 연동하여 투자자의 대여자금 처분, 인증 CDFI의 차입금 상환, 투자자에의 자금지급에 부과하는 규제는 인증 CDFI가 유치한 자금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쇠퇴·낙후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 등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증 CDFI의 자금공급 및 관련 규제

인증 CDFI는 CITR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여 조성한 투자재원(Investment Fund)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하 적격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매입을 통해 자금을 공급해야 한

다(www.hmrc.gov.uk/manuals/citmanual).

- ① 영국정부 및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공표한 쇠퇴·낙후지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쇠퇴·낙후수준을 가진 지역에 입지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이거나, 취약계층이 소유·경영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② 그리고 인증 CDFI 이외에는 사업자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임을 해당 인증 CDFI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인증 CDFI는 CDFI와 연관된 기업에게는 예외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연도미상).

인증을 유지할 목적하에, 인증 CDFI는 투자재원의 일정 비중 이상을 적격 중소기업에게 공급해야 한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연도미상; www.hmrc.gov.uk/manuals/citmanual).

- ①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직후 3년의 기간: 투자재원의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을 각각 인증 1주년, 2주년, 3주년 기념일까지 적격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 ② 그 이후의 기간: 적격 중소기업에게 공급한 자금의 비중 평균이 매년 75% 이상이어야 하며, 비중 평균은 1년간의 일평균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1년 중 4개 분기일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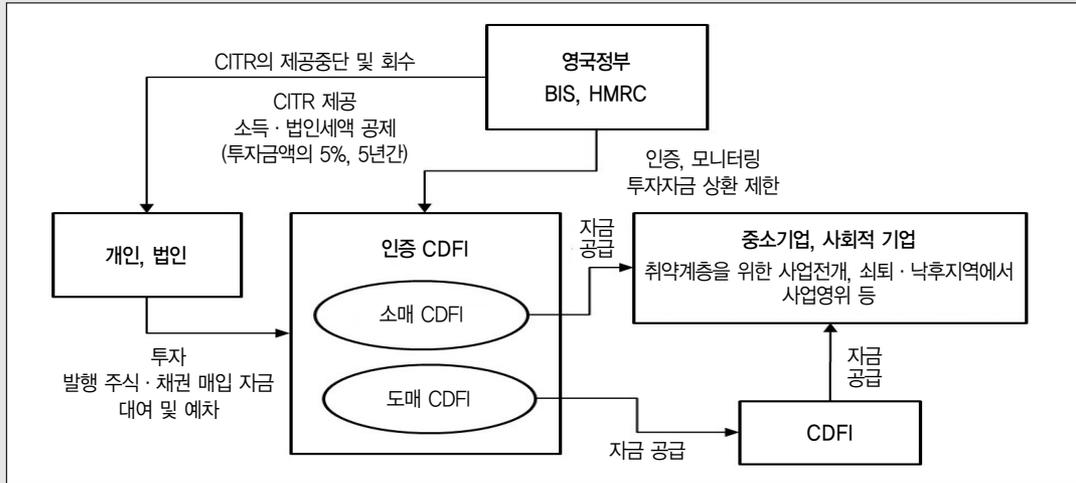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국정부는 인증 CDFI에 부여한 인증을 철회한다. 그리고 인증

CDFI에 의한 다음과 같은 자금공급은 적격 중소기업에의 자금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연도미상; www.hmrc.gov.uk/manuals/citmanual).

- ① 공공자금에 기반을 둔 보증(Publicly-Funded Guarantee)을 받고 이루어지는 자금공급
- ② 영리기업(Profit-Distributing Enterprise)⁶⁾에 의 대출로서 한도금액 10만 파운드를 초과하게 하거나, 용자조건이 일반 금융기관의 용자조건에 상응하지 않거나, 또는 대출이자율⁷⁾ 및 수수료율이 시장수준 미만인 경우
- ③ 영리기업에의 지분출자
- ④ 커뮤니티 프로젝트⁸⁾에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비영리기업(Non-Profit-Distributing Enterprise)에 이루어지는 대출 및 지분출자로서, 총액한도 25만 파운드를 초과하게 만드는 대출 및 지분출자
- ⑤ 특정 기업에의 자금공급으로서, 해당 기업에 공급되는 자금이 인증 CDFI 투자재원(자금공급 날짜 직전의 인증 기념일 현재 기준)⁹⁾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⑥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 건설·개발에 대한 직·간접적 자금공급. 그리고 인증 CDFI가 CITR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활용하여 주거용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됨(www.hmrc.gov.uk/manuals/citmanual)
- ⑦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개발 전문 비영리기업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개발을 위한 개발신탁(Development Trust) 및 사회적 기업에의 자금공급. 단, 해당 자금공급 총액이 그 이외 적격 중소기업에의 자금공급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매년 인증 기념일 현재 기준)¹⁰⁾
- ⑧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투자·개발 전문 영리기업에의 자금공급. 단, 해당 자금공급 총액이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개발 전문 비영리기업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개발을 위한 개발신탁 및 사회적 기업에의 자금공급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매년 인증 기념일 현재 기준)
- ⑨ 인증 소매 CDFI에 의한 다른 CDFI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의 자금공급으로서 공급자금이 인증 CDFI 투자재원(인증 소매 CDFI의 자금공급 날짜 직전 인증 기념일 현재 기준)¹¹⁾의 10%를 3개월 넘게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인증 CDFI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

6) CITR에 관한 한, 영국의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는 비영리기업으로 간주된다(www.hmrc.gov.uk/manuals/citmanual).
 7) 인증 CDFI는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 간에 대출금리를 차등하여 적용하는데, 전자의 경우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한다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연도미상).
 8)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공공부문 사업, 공공기능에 관여하는 자선단체 및 비영리조직에 이득을 주는 사업, 또는 지역적 성격(of a purely local nature)을 갖는 소규모 사업을 지칭한다(www.hmrc.gov.uk/manuals/citmanual).
 9) 인증 이후 1년까지는 인증 CDFI가 자금을 공급한 날짜 현재의 해당 CDFI의 투자재원을 적용한다(www.hmrc.gov.uk/manuals/citmanual).
 10) 물론 인증 CDFI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수행할 수는 있다(www.hmrc.gov.uk/manuals/citmanual).
 11) 각주 7) 참조
 12) 각주 7) 참조

〈그림 1〉 영국정부의 CITR 운용과 인증 CDFI의 자금공급



하는 비인증 기관에 대한 인증 소매 CDFI의 자금공급으로서 2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⑩ 인증 도매 CDFI에 의한 자금공급으로서 해당 CDFI 투자제한(인증 도매 CDFI의 자금공급 날짜 직전의 인증 기념일 현재 기준)¹²⁾의 20% 와 25만 파운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인증 CDFI에 준하는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 도매 CDFI의 자금공급으로서 2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 CDFI의 투자제한 중 일정 비중 이상을 적격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하는 규제는 해당 중소기업에의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격 중소기업에의 자금공급 여부 규정을 보면, 소수의 기업 및 CDFI로의 자금공급 편중을 지양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게다가 영리기업에의 지분출자를 적격 중소기업에의 자금공급에서 제외하고 영리기업에 비해 비영리

기업에의 자금공급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등 비영리 기업을 상대적으로 우대한다. 이것은 비영리기업이 영리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 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영리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자금공급의 제약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자금공급 관련 규제는 주거용부동산에의 직·간접적 자금공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기업에의 자금공급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정부의 CITR 운용과 인증 CDFI의 자금공급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쇠퇴·낙후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 등에 인증 CDFI가 자금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록, 영국정부는 인증 CDFI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게 CITR을 제공함으로써 인증 CDFI의 자금 유치를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인증 CDFI에 의한 차입금 상환, 주식·채권 재매입 등의 투자자금 상환을 제한하고, CITR의 제공 중단 또는 기 제공된 CITR의 회수 조치를 활용하여 투자자에 의한 대여자금 처분, 투자자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 상환 및 자금지급을 규제한다. 그럼으로써 인증 CDFI가 유치 자금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쇠퇴·낙후지역에 입지하여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해당 기업에의 자금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국정부는 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인증 CDFI가 자금을 유치하여 조성한 투자재원의 일정 비중 이상을 적격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및 그에 준하는 사업조직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사회연대은행, 미소금융기관 등 그간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게 무보증·무담보로 소액 창업·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온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의 사회적 기업에의 자금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어촌 등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그에 준하는 사업조직의 육성에 대한 논의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쇠퇴·낙후지역에 입지하여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국 인증 CDFI의 자금공급 기능,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증 CDFI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CITR 제공 및 관련 규제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

참고문헌

변필성, 2009.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11-121.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연도미상. Questions and Answers relating to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www.bis.gov.uk에서 구독 가능)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008.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Material Concerning the Accredit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Publish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15 January 2003 and Revised on 11 March 2008)(www.bis.gov.uk에서 구독 가능)
 Explanatory Memorandum to the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Accredit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Amendment) Regulations 2008 No.383(Prepared by HM Revenue and Customs)(www.bis.gov.uk에서 구독 가능)
 영국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의 홈페이지: www.bis.gov.uk
 영국 HM Revenue & Customs의 CITR 매뉴얼 홈페이지: www.hmrc.gov.uk/manuals/citmanual